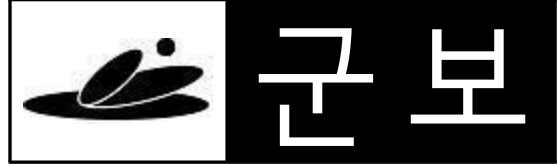


예 산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709호 2023. 6. 15.(목)

고 시

- 예산군 고시 제2023-137호 : 군관리계획(연구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2
- 예산군 고시 제2023-141호 : 군계획시설(덕산면 중로 3-5호선 외 1개소)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4

공 고

- 예산군 공고 제2023-1027호 : 군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 실시계획(변경)인가 열람공고 6
- 예산군 공고 제2023-1028호 : 군계획시설(도로:예산읍 소로3-151호)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13

입 법 예 고

- 예산군 공고 제2023-973호 : 예산군 학교급식 지원 관련 시행규칙 폐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5
- 예산군 공고 제2023-1029호 :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7

회									
람									

발행 예 산 군 (편집 기획실 ☎ 339-7142)

예산군 고시 제2023-137호**군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충청남도사 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군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고시 합니다.

2023년 6월 15일

예산군수

가. 사업의 종류 : 군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

나. 사업개요

도시명	사업명	위치	사업의 종류	사업량	비고
광시면	항새문화관 증축 및 인공폭포와 바닥 분수 조성사업	예산군 광시면 대리 230번지 일원	군계획시설 (연구시설)	항새문화관 증축 169.95㎡, 인공폭포와 바닥분수 조성 969.95㎡	

다.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주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 성명 : 예산군수

라. 사업기간 : 2023. 06. 15. ~ 2023. 12. 31.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조서(붙임참조)

(붙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

위치: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대리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적면적(m ²)	편입면적(m ²)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230	공	135,669	135,669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			

예산군 고시 제2023-141호

군계획시설(덕산면 중로 3-5호선 외 1개소)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군계획시설(도로:덕산면 중로 3-5호선 외 1개소)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열람·공고를 완료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충청남도사무 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군계획시설(도로:덕산면 중로 3-5호선 외 1개소)사업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고시 합니다.

2023년 6월 15일

예 산 군 수

가. 사업의 종류 : 군계획시설 사업(덕산면 중로 3-5호선 외 1개소)

나. 사업개요

도시명	사업명	위치	사업의 종류	사업량	비고
덕산면	산평리도로(중3-5,소3-8호) 개설공사	예산군 덕산면 산평리 276-2번지 일원	군계획시설 (도로:중로3-5호, 소로 3-8호)	도로개설 L=60.0m, B=6.0m	

다.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주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 성명 : 예산군수

라. 사업기간 : 2023. 6. 15. ~ 2024. 6. 30.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조서 : 붙임과 같음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
(예산군 덕산면)

구분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신평리	276-6	전	421	81		국토 교통부				
2	신평리	276-2	전	409	317	서울 도봉구 방학동 272 신동아아파트 7-806	구본수				
3	신평리	277-14	전	17	12		예산군				
4	신평리	277-9	전	59	59		예산군				
5	신평리	230-1	도	3,264	77	덕산면 신평리 252	신평리2구 새마을회				
6	신평리	272	전	1,226	257	덕산면 신평2길 9-18	박명순	농협은행 (주)	예산읍 향천사로 112-1	근저당	
						덕산면 덕산온천로 21-11,102동 402호 (아람파크빌)	서진주	농협은행 (주)	덕산면 신평2길 9-18	근저당	
7	신평리	7-1	전	1,947	1	덕산면 신평리 7	이석원				
소 계					804						

예산군 공고 제2023-1027호

군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 실시계획(변경)인가 열람공고

1. 예산군 삼교읍 목리 687-57번지 일원에 군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열람기간 내에 예산군청 도시건축과 (041-339-770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6. 15.

예 산 군 수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예산군 삼교읍 목리 687-57번지 일원(내포신도시내)

나. 사업의 종류 : 군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

명칭 : 사계절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 부지면적

구분	합계	용도별				비고
		체육시설용지	건축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녹지용지	
면적 (m ²)	382,455	175,083	5,550	58,298	143,524	최초결정일 2009.3.20.

- 시설규모 : 정규대중골프장 9홀

구분		면적(m ²)			구성비 (%)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체육시설부지(골프장)		382,455	-	382,455	100.0		
체육 시설 용지	골 프 코스	티	5,448	-	5,448	1.4	36 EA
		그린	10,577	-	10,577	2.8	16 EA
		페어웨이	68,638	-	68,638	17.9	9 EA
		러프	69,196	-	69,196	18.1	9 EA
		벙커	7,252	-	7,252	1.9	66 EA
		연습그린(P.G)	626	-	626	0.2	1 EA
	묘포장	1,846	-	1,846	0.5	1 EA	
	체육시설예정부지	11,500	-	11,500	3.0	1 EA	
소 계		175,083	-	175,083	45.8		

<표계속>

구분		면적(m ²)			구성비 (%)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건축 시설	클럽하우스 & 골프연습장	3,700	-	3,700	1.0	1동
	관리동	1,700	-	1,700	0.4	1동

용지	티하우스(T/H)	150	-	150	0.1	1동
	소 계	5,550	-	5,550	1.5	
공공 시설 용지	주차장연결도로	60	-	60	0.1	
	카트도로	10,618	-	10,618	2.8	L=4,247m
	주차장	5,500	-	5,500	1.4	1 EA
	연못(LAKE)	38,024	-	38,024	9.8	연못 7 EA, 재해 4 EA
	계류(CREEK)	682	-	682	0.2	3 EA
	수로	3,414	-	3,414	0.9	2 EA(소하천)
	소 계	58,298	-	58,298	15.2	
녹지 용지	조성녹지	101,069	-	101,069	26.4	
	비관리지역	42,455	-	42,455	11.1	
	소 계	143,524	-	143,524	37.5	

- 건축면적 : 4,124.83㎡, 건폐율 : 1.08%, 용적률 : 1.62%

※ 상기 시설규모는 검토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사업시행자 주소·성명(변경없음)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8층(여의도동, 신영증권빌딩)

- 성 명 : 신영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순문

마. 사업기간(변경)

- 기 정 : 2022. 1. 10.(실시계획인가일)부터 ~ 2023. 6. 30.까지

- 변 경 : 2022. 1. 10.(실시계획인가일)부터 ~ 2024. 6. 30.까지

바. 열람기간 : 2023. 6. 15. ~ 2023. 6. 29.(14일간)

사. 열람장소 : 예산군청 도시건축과(041-339-7702) 및 삼교읍 내포출장소(삼교읍주민복합지원센터)에서 열람가능]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 조서(변경없음) : 붙임과 같음.

자. 관계도서 : 게재 생략(예산군청 도시건축과 및 삼교읍 내포출장소 열람가능)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유자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변경없음)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권	
						성명	주소
합계				654,507	382,455		
1	목리	343-42	전	2,077	84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	목리	343-47	과	7,271	5,66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목리	343-60	답	2,063	48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4	목리	343-67	임	992	70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5	목리	343-68	임	1,058	1,05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6	목리	343-69	임	992	99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7	목리	343-70	임	1,157	1,15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8	목리	343-72	임	1,308	96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9	목리	343-73	임	1,653	1,10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0	목리	343-74	임	1,322	96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목리	343-75	임	991	52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2	목리	343-76	임	1,487	18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3	목리	343-77	임	992	99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4	목리	343-78	임	830	83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5	목리	343-79	임	826	82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6	목리	343-82	임	992	32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7	목리	343-83	임	1,091	1,09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8	목리	343-84	임	1,488	1,48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9	목리	343-85	임	1,058	1,05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0	목리	343-86	임	827	82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1	목리	343-87	임	992	99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	목리	343-88	임	1,322	1,32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3	목리	343-89	임	992	99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4	목리	343-90	임	989	98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5	목리	343-92	임	1,055	74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6	목리	343-93	임	1,322	53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7	목리	343-94	임	1,157	62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8	목리	343-95	임	1,255	38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9	목리	343-96	임	1,157	1,15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0	목리	343-97	임	1,157	1,15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1	목리	343-98	임	1,322	1,32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권	
						성명	주소
32	목리	343-99	임	1,322	1,32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3	목리	343-100	임	992	99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4	목리	343-101	임	992	3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5	목리	343-103	임	661	2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6	목리	343-104	임	992	26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7	목리	517-10	전	96,296	21,17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8	목리	517-15	전	27,735	26,49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9	목리	517-98	대	470	1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40	목리	533-2	전	415	1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41	목리	533-6	전	15,007	12,02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42	목리	533-16	전	639	20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43	목리	534	전	51,470	34,93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44	목리	538-4	전	15,013	1,56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45	목리	538-5	전	60,899	21,87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46	목리	538-12	대	608	60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47	목리	538-14	목	2,300	2,3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48	목리	538-15	대	846	84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49	목리	538-25	대	410	39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50	목리	538-26	전	317	31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51	목리	538-27	대	659	65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52	목리	538-63	대	938	93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53	목리	538-65	임	321	31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54	목리	538-66	임	2,150	2,08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55	목리	538-67	임	14,713	6,50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56	목리	538-88	임	4,131	34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57	목리	538-92	임	8,049	6,21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58	목리	539-3	대	1,160	1,16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59	목리	539-5	임	484	48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60	목리	687-9	과	10,525	7,94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61	목리	687-15	전	737	22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62	목리	687-24	전	1,032	1,03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63	목리	687-26	전	2,413	1,39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64	목리	687-29	전	274	27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권	
						성명	주소
65	목리	687-31	전	6,396	1,72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66	목리	687-37	대	400	4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67	목리	687-38	전	1,012	1,01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68	목리	687-39	전	1,263	46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69	목리	687-49	도	395	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70	목리	687-50	대	2,930	64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71	목리	687-57	전	44,929	40,57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72	목리	687-58	도	270	26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73	목리	687-59	임	2,312	2,31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74	목리	687-60	도	2,310	2,16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75	목리	687-61	임	1,406	1,40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76	목리	687-62	임	1,971	1,04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77	목리	687-64	임	478	2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78	목리	687-75	임	300	3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79	목리	687-76	임	522	52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80	목리	687-77	임	149	14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81	목리	687-78	임	108	10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82	목리	687-79	임	128	12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83	목리	687-80	임	967	96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84	목리	687-81	임	943	84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85	목리	687-82	임	85	8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86	목리	687-83	임	467	46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87	목리	687-84	임	87	8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88	목리	687-85	임	454	45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89	목리	687-86	임	1,197	1,19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90	목리	687-87	임	103	10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91	목리	687-88	임	474	47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92	목리	687-89	임	88	8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93	목리	687-90	임	460	46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94	목리	687-91	임	867	86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95	목리	687-92	임	121	12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96	목리	687-114	임	144	3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97	목리	696-42	구	2,178	2,064	국(국토교통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권	
						성명	주소
98	목리	696-44	구	1,026	666	국(국토교통부)	
99	목리	산141-1	구	6,990	1,502	국(국토교통부)	
100	목리	산141-3	구	8,120	3,367	국(국토교통부)	
101	목리	산53-1	임	5,522	4,14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02	목리	산53-7	임	26,536	22,91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03	목리	산54	임	14,733	12,86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04	목리	산55-43	임	595	59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05	목리	산55-51	임	1,289	47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06	목리	산55-53	임	4,949	4,94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07	목리	산55-54	임	7,981	7,37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08	목리	산55-60	임	100	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09	목리	산55-64	임	100	1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0	목리	산55-76	임	100	1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1	목리	산55-77	임	100	1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2	목리	산55-78	임	199	19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3	목리	산55-91	임	100	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4	목리	산55-94	임	199	19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5	목리	산55-95	임	198	19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6	목리	산55-103	임	198	2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7	목리	산55-104	임	100	8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8	목리	산55-106	임	100	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9	목리	산55-107	임	299	29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20	목리	산55-114	임	18,346	7,86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21	목리	산55-116	임	3,907	1,47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22	목리	산55-117	임	2,003	36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23	목리	산55-127	임	44,585	28,50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24	목리	산55-131	임	630	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25	목리	산55-132	임	12,528	5,81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26	목리	산55-133	임	9,888	1,77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27	목리	산56-1	임	16,164	15,56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28	목리	산58-5	임	595	59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29	목리	산78-10	임	99	9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30	목리	산78-14	임	3,509	3,34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권	
						성명	주소
131	목리	산87-3	임	1,388	1,11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32	목리	산88-2	임	1,091	5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33	목리	산91-2	임	3,965	14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34	목리	산91-3	임	1,587	1,58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35	목리	산91-11	임	533	53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36	목리	산92-2	임	1,460	48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37	목리	산92-19	임	7,696	3,47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38	목리	산92-20	임	920	28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예산군 공고 제2023-1028호**군계획시설(도로:예산읍 소로3-151호)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310-3번지 일원 군계획시설(도로 : 예산읍 소로3-151호)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6. 15.

예 산 군 수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310-3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 군계획시설 사업(도로)

다. 사업개요

도시명	사 업 명	위 치	사업의 종류	사업량	비고
덕산면	예산4리(상설시장) 도로(소3-151호) 개설공사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310-3번지 일원	군계획시설 (도로 : 예산읍 소3-151호)	도로개설 L=110.0m, B=5.0m	

라.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주 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 성 명 : 예 산 군 수

마. 사업기간 : 인가일로부터 ~ 2025. 12. 30.

바. 열람기간 : 2023. 6. 15. ~ 2023. 6. 29.(14일간)

사. 열람장소 : 예산군 도시건축과(041-339-7702)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조서 : 붙임과 같음

자. 관계도서 : 생략(예산군 도시건축과에 비치)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
(예산군 예산읍)

구분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 고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예산	310-3	대	332	115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93-10	장 * 경				
2	예산	310-4	대	423	5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임 * 숙				
3	예산	311-1	대	454	79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공원2길 17,	황 * 훈	서천농업 협동조합	충청남도 서천읍 17	서천군 군청로 근저당권	
4	예산	309	대	182	8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천변로	유 * 린				
5	예산	311-5	대	62	59		예 * 군				
6	예산	747	도	4,103	15		국 (국토교통부)				
7	예산	307	대	112	1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송 * 자				
8	예산	304-5	차	408	108		예 * 군				
9	예산	304-3	차	171	68		예산군				
10	예산	316	대	691	6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예 * 화 * 소학 *				
11	예산	304-2	대	155	1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형제고개로	양 * 숙				
12	예산	304-4	전	10	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46,	김 * 환				
13	예산	316-1	대	202	40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신 * 기				
14	예산	303-14	대	192	64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신 * 기				
15	예산	303-12	대	281	14	경기도 평택시 현촌3길 21,	임 * 남	예산신우 신용협동조 합	충청남도 예산읍 170	예산군 예산로 근저당권	
16	예산	303-17	대	71	5		예산군				
17	예산	303-28	대	1	1		예산군				
소 계					590						

예산군 공고 제2023-973호

예산군 학교급식 지원 관련 시행규칙 폐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예산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6월 1일

예 산 군 수

1. **조례(규칙)명** : 「예산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개정.폐지)이유

- 법규관리의 효율성과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자 개별적으로 제정·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통합하여 일원화하고 급식에 대한 범위를 넓혀 총괄적인 내용을 담은 「예산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예산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로
- 이와 관련된 「예산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예산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

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

4. 입법예고 기간 : 2023. 6. 1. ~ 6. 21.(20일간)

5. 의견제출

이 폐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 또는 기관, 단체는 2023년 6월 21일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수(참조: 농정유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예산군청 농정유통과 먹거리지원팀

- 우편발송 : 충남 예산군 오가면 윤봉길로 1891-19(우편번호 : 32425)

- 전자메일 : j961206@korea.kr

- 기타 문의 관련 : 041)339-8272, 팩스: 041)339-7559

라. 제출방법 : 우편, 메일, 전화, 팩스(팩스제출 시 사전 전화통보 요망)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2. 예산군 학교급식 지원 관련 시행규칙 폐지 시행규칙안 1부. 끝.

[붙임 1]**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 「예산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 시행규칙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붙임 2]

예산군 규칙 제 호

예산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

시행규칙안

예산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규칙 제 호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
칙 폐지 시행규칙안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
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 시행규칙안 전문]

예산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산업건설국 농정유통과)

(제정) 2016.09.19 규칙 제141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재료 배송자”(이하 “배송자”라 한다)란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와 협약을 맺고 지원대상 시설의 장(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식재료를 최종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식재료 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란 식재료를 지원센터에 납품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체계)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확정된 예산으로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 후 별지 서식의 급식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을 통지받은 지원대상자는 급식경비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시기는 지원대상자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계획서를 접수받은 군수는 급식 지원계획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의 정산) 지원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보조금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센터의 운영) ① 지원센터는 식재료를 생산자(단체)를 포함한 다수의 공급자들이 제출한 목록에서 엄선하여 전산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지원대상자가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장은 지원대상자와 공급자 및 배송자에 대하여 식재료 공급의 적정여부 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제6조(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물품가격 분과위원회 : 학교급식 물품의 공급방법, 업체선정, 물품

선정, 단가결정 등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등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2. 농산물 생산자 분과위원회 :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농산물에 대한 생산 및 공급방법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등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3. 교육·홍보 분과위원회 : 농업인, 영양(교)사, 학생 등에 대한 교육 및 정책 홍보방법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등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와 위촉 해제는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내용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분과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은 조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배송자 선정 및 협약체결) ① 군수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시설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배송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선정된 배송자는 급식의 공공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지원센터와 위탁수수료 및 운영규정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배송자와 협약체결 기간은 1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배송자의 의무) ① 배송자는 지원센터에 납품된 식재료를 배송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장소와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여야 한다.

② 배송자는 지원센터에서 지정한 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지정차량의 설비기준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③ 배송자는 건강진단서를 지참하여야 하며, 청결한 복장(위생복, 위생화, 위생모, 장갑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④ 배송자는 학교 검수담당자의 입회하에 대면검수를 받아야 하며, 검수확인서를 받아 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배송자는 식재료가 배송 중에 변질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지원센터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공급자 선정 및 협약체결) 공급자의 선정과 협약체결은 제8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공급자의 의무) ① 공급자는 지원센터에서 정한 식재료 품질기준에 맞는 식재료를 지원센터에 등록하여야 지원대상자에게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식재료의 원재료 등 재료의 사양이 상세히 적힌 품목 제조보고서를 붙여서 지원센터가 권장하는 적정한 가격에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격은 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③ 공급자는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의 요구에 따라 지정한 장소에 물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식재료의 원재료와 첨가물 등이 상세히 적힌 품목 제조 보고서에 근거하여 지원센터가 실제조사를 요구할 때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2조(수당)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제1410호, 2016.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산업건설국 농정유통과)

(제정) 2017.05.15 규칙 제1420호

(일부개정) 2022.11.30 규칙 제1540호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제47조에 따라 회계
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2.11.30.>

- 1. 분임징수관 : 농정유통과장
- 2. 분임재무관 : 농정유통과장
- 3. 물품관리관 : 농정유통과장
- 4. 물품출납원 : 학교급식팀장
- 5. 지출원 : 학교급식팀장
- 6. 수입금출납원 : 농정팀장
- 7.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학교급식팀장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임명
할 수 있다.

부칙<제1420호, 2017.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0호, 2022.11.30.>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
장제3절(제16조) 및 별표 8, 별표 9, 별표 14 중 사업소란의 개정규정

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설립·출범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⑭ 생략

⑮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7호 중 “급식지원팀장”을 각각 “학교급식팀장”으로 한다.

⑯ 생략

예산군 공고 제2023 - 1029호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2023년 6월 15일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 부대개편에 따른 구성위원 및 분야별 간사 등 직책 명칭을 현행화하고 일부 규정 등의 문구를 수정하여 명확하게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구성위원 및 분야별 간사 등 직책 명칭 현행화(안 제3조 및 제 8조)
 - 일부 규정의 문구 수정(안 제3조 및 제7조, 별표 2)

4. 입법예고 기간: 2023. 6. 15. ~ 7. 5.(20일간)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있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 안전관리과 민방위팀(☎ 041-339-7793, FAX : 041-339-775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편발송 : (우편번호 32435)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 안전관리과 민방위팀
- 전자메일 : hante97@korea.kr
- 기타 문의 관련 : ☎(041)339-7793, FAX : (041)339-7759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1부. 끝.

[붙임 1]**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붙임 2]

예산군 조례 제 호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제1789부대 제4대대장”을 “제1789부대 제3대대장”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332군사안보지원부대 및 관할 안보지원 부대장(원)”을 “국군 제332방첩부대 제132방첩대 2팀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2호 중 “예비군담당간사: 제1789부대 제4대대 동원과장”을 “예비군담당간사: 제1789부대 제3대대 동원과장”으로,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작전담당간사: 제1789부대 제4대대 작전과장”을 “작전담당간사: 제1789부대 제3대대 정작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8항제1호 중 “기타 사유”를 “그 밖에 사유”로 한다.

제7조제3항제1호다목 중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재정동원지원반, 건설·수송·장비동원지원반”을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나목 중 “분야별 지원반은 읍은 총괄지원반, 재정·보급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 면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을 “분야별 지원반은 읍은 총괄지원반, 보급·재정 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 면은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제1789부대 4대대”를 “제1789부대 제3대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789부대 제4대대장”을 “제1789부대 제3대대장”으로 한다.

[별표 2] 예산군 통합방위지원본부 기능별 임무 중 “6. 건설·수송·장비 동원지원반(장)의 가. 산업·건설·수송 지원계획”을 “6. 산업·수송·장비동원 지원반(장)의 가. 산업·수송·장비 지원계획”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예산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고,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3조(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 ----- ----- ----- ----- ----- ----- -----.</p>
<p>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p> <p>1. (생략)</p> <p>2. <u>제1789부대 제4대대장</u></p> <p>3. <u>332군사안보지원부대 및 관할 안보지원 부대장(원)</u></p> <p>4. ~ 11. (생략)</p>	<p>②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제1789부대 제3대대장</u></p> <p>3. <u>국군 제332방첩부대 제132방첩대 2팀장</u></p> <p>4. ~ 11. (현행과 같음)</p>
<p>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p> <p>1. (생략)</p>	<p>③ ----- ----- ----- -----.</p> <p>1. (현행과 같음)</p>

2. 예비군담당간사 : 제1789부대
제4대대 동원과장

3. 작전담당간사 : 제1789부대
제4대대 작전과장

4. ~ 5. (생략)

④ ~ ⑦ (생략)

⑧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협의회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협의회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7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설치, 조직 및 운영) ① 군수, 읍·면장 소속하에 군,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생략)

③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를 기준으로 하여 구성인원과 분야별 지원반을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

2. 예비군담당간사 : 제1789부대
제3대대 동원과장

3. 작전담당간사 : 제1789부대
제3대대 정작과장

4. ~ 5.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

-----.

1. 질병 또는 그 밖에 사유로 협의회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

3. -----

제7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설치, 조직 및 운영) ① -----

-----.

② (현행과 같음)

③ -----

직·운영한다.

1. 예산군 지원본부

가. ~ 나. (생략)

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재정동원지원반, 건설·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사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라. ~ 바. (생략)

2. 읍·면 지원본부

가. (생략)

나. 분야별 지원반은 읍은 총괄지원반, 재정·보급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 면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미편성된 지원반의 임무·기능은 총괄지원반에서 수행하며 전시 정부기능업무(주민통제, 배급, 민방위대 통제 등)를 병행하고,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2명 이상 4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다. ~ 라. (생략)

-----.

1.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사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라. ~ 바. (현행과 같음)

2. 읍·면 지원본부

가. (현행과 같음)

나. 분야별 지원반은 읍은 총괄지원반, 보급·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 면은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미편성된 지원반의 임무·기능은 총괄지원반에서 수행하며 전시 정부기능업무(주민통제, 배급, 민방위대 통제 등)를 병행하고,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2명 이상 4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다. ~ 라. (현행과 같음)

제8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 설치·운영)

- ① ~ ② (생략)
- ③ 합동상황실은 합동상황실장과 군·경 정보작전요원으로 구성하되, 합동상황실장은 육군 제1789부대 제4대대 참모 또는 예산경찰서의 계장급으로 임명한다.
- ④ 합동상황실은 “병중 사태”까지는 예산경찰서장이, “을중 사태” 이상은 제1789부대 제4대대장의 책임하에 각각 운영한다.

[별표 2]
예산군 통합방위지원본부 기능별 임무

명 칭	임 무
1. 지원 본부장	가.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나.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대표하며, 지원본부의 사무를 관장하고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을 지휘·감독 다. 지원본부 편성요원 임명 및 위촉 라. 예하 행정기관의 지원본부를 지휘·감독 마. 각 분야별 지원반의 업무 협조 및 조정·통제 바. 상하 인접지원 부서간의 지휘 및 협조체제 유지 사. 군·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제8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 설치·운영)

- ① ~ ② (현행과 같음)
- ③ 합동상황실은 합동상황실장과 군·경 정보작전요원으로 구성하되, 합동상황실장은 육군 제1789부대 제3대대 참모 또는 예산경찰서의 계장급으로 임명한다.
- ④ 합동상황실은 “병중 사태”까지는 예산경찰서장이, “을중 사태” 이상은 제1789부대 제3대대장의 책임하에 각각 운영한다.

[별표 2]
예산군 통합방위지원본부 기능별 임무

명 칭	임 무
1. 지원 본부장	(현행과 같음)

	<p>긴급상황 발생시 즉각 지원태세 유지</p> <p>아. 각 분야별 주요지원 및 조치사항 종합</p>		
<p>2. 종합 상황실 (장)</p>	<p>가. 각종 상황을 파악·유지하고 각 분야별 지원반 활동을 조정·통제</p> <p>나. 신속·정확한 정보 전파</p> <p>다. 작전부대와 협조하여 지원요소 파악, 지원 지시</p> <p>라. 통합방위작전에 관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시 통합방위협의회에 건의</p> <p>마. 예하 행정관서의 지원본부 상황실 지휘·감독</p> <p>바. 통합방위작전 지원계획을 조정·통제</p> <p>사. 군·경 작전상황을 파악하여 지원본부에 전파</p> <p>아. 지원본부의 지원상황을 군·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에 통보</p>	<p>2. 종합 상황실 (장)</p>	<p>(현행과 같음)</p>
<p>3. 총괄 지원반 (장)</p>	<p>가.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업무 전반</p> <p>나.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되는 각종 회의 관장</p>	<p>3. 총괄 지원반 (장)</p>	<p>(현행과 같음)</p>
<p>4 인력 동원 지원반(장)</p>	<p>가. 인력지원, 병력동원업무 계획을 수립·시행 및 지원</p> <p>나. 예비군, 민방위대의 비상연락망을 유지 및 조정</p> <p>다. 실비 변상, 가료 및 구호 소요 제기</p> <p>라. 국가동원계획의 인력·병력동원 집행준비 및 지원</p> <p>마. 가용인력 및 가용병력 현황 파악 유지</p> <p>바. 주민통제 업무</p>	<p>4 인력 동원 지원반(장)</p>	<p>(현행과 같음)</p>

5. 재정 동원 지원반(장)	가. 예산지원 계획을 수립·시행 나. 지원본부 운영예산 결산 다. 국가동원 계획의 재정동원 집행 준비
6. <u>건설· 수송·장비</u> 동원지원 반(장)	가. <u>산업·건설·수송</u>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작전 지원차량 소요판단·확보 등 지원 업무 나. 건설복구 및 수송지원조 편성 운용 다. 실비변상, 회수 및 반환 업무 라. 국가동원계획의 건설 및 수송동원 시항에 대한 집행 준비·지원 마. 민방위 지원대와 연계하여 기술인력 확보 및 피해복구 업무 바. 차량통제
7. 의료· 구호지원 반(장)	가. 의료구호 및 후송지원 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 나. 의료·구호조를 편성·운용하고 의료시설 및 요원 지정·통제 다. 급수 및 방역 업무 시행 라. 국가동원 계획의 의료동원 집행준비 및 지원 마. 사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바. 작전 동원된 예비군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당하여 의료시설에서 가료한 경우 진료비 지원
8. 보급· 급식지원 반(장)	가. 보급·급식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작전동원병력 급식·보급 지원 나. 보급·급식 장비 획득 지원 다. 국가동원계획의 공산품·농수산물자동원 집행 준비
9. 통신·	가. 통신지원 계획 수립·시행 및

5. 재정 동원 지원반(장)	(현행과 같음)
6. <u>산업· 수송·장비</u> 동원지원 반(장)	가. <u>산업·수송·장비</u>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작전 지원차량 소요판단·확보 등 지원 업무 나. 건설복구 및 수송지원조 편성 운용 다. 실비변상, 회수 및 반환 업무 라. 국가동원계획의 건설 및 수송동원 시항에 대한 집행 준비·지원 마. 민방위 지원대와 연계하여 기술인력 확보 및 피해복구 업무 바. 차량통제
7. 의료· 구호지원 반(장)	(현행과 같음)
8. 보급· 급식지원 반(장)	(현행과 같음)
9. 통신·	(현행과 같음)

<p>전산지원 반(장)</p>	<p>지원 나. 지원본부 통신망 구성 및 운용 다. 종합 통신운용계획 수립·시행 및 감독 라. 통신지원조 편성, 운용 및 통신시설 가설·복구 마. 국가동원 계획의 통신지원 집행 준비 및 지원</p>	<p>전산지원 반(장)</p>	
<p>10. 홍보 지원반(장)</p>	<p>가. 홍보 및 계몽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수립·시행 나. 홍보매개체 조정·통제, 홍보(계몽)반 편성·운영 다. 국가동원계획의 홍보매체 동원집행 준비 라. 군사작전 홍보지원계획 수립·시행</p>	<p>10. 홍보 지원반(장)</p>	<p>(현행과 같음)</p>